

경상북도 고시 제2013-246호

김천시 장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설치인가 고시

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3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목적

김천시 대덕면 관기리, 추량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,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2. 인가내용

가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사업시행자 : 김천시장
-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신읍동 시청1길 1번지(신읍동 1284)

나.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등

